2025년도 자동차 분야
2차 신규 공고 안내

내일을 바꾸는 기술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CONTENTS

1 사업개요 및 지원규모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5 평가 절차 및 기준

6 기타 유의사항

7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8 문의처

9 FAQ

1 사업개요 및 지원규모

*상세 내용은 공고문(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사업목적

1.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
 - (그린카)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차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스마트카) 국제 안전규제 강화와 미래차 패러다임 대응의 목적으로 ICT 기술을 융합한 운전자의 안전 및 편의성 향상 기술 등 스마트카 분야 기술개발 지원

2.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일체형 급속 무선 충전 기술개발사업
 - 무선충전시간을 70분 이내로 단축 가능하고 차량 정렬오차를 기존 대비 2배까지 허용 가능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배터리시스템 일체형 50kW이상급 무선 급속충전시스템 및 실차 검증기술 개발

1 사업개요 및 지원규모

*상세 내용은 공고문(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사업목적

3. SDV용 AI가속기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 완성차의 최종 수요에 기반하고 국내외 기술선도社와의 협력개발을 통한 차세대 SDV용 고성능 차량용 AI 가속기 기술 및 관련 SW의 국산화 개발

★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24.1)에 따라 분산 공고

1 사업개요 및 지원규모

*상세 내용은 공고문(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지원규모

사업명		공고예산(억원)	과제 수(개)	지원 규모 및 기간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그린카	85	10* * 미래자전환(자유공모) 6건 포함	과제에 따라 다르므로 RFP/품목개요서 참조
	스마트카	173	74	
전기차배터리시스템일체형급속무선충전기술개발		40	1	
SDV용AI가속기반도체기술개발		42.5	1	

개발기간

개발 기간	개발 단계 및 연차
	1단계
30개월(총 3차년도)	3차년도(30개월)
42개월(총 4차년도)	4차년도(42개월)

2 사업추진체계

*상세 내용은 공고문(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1 일반형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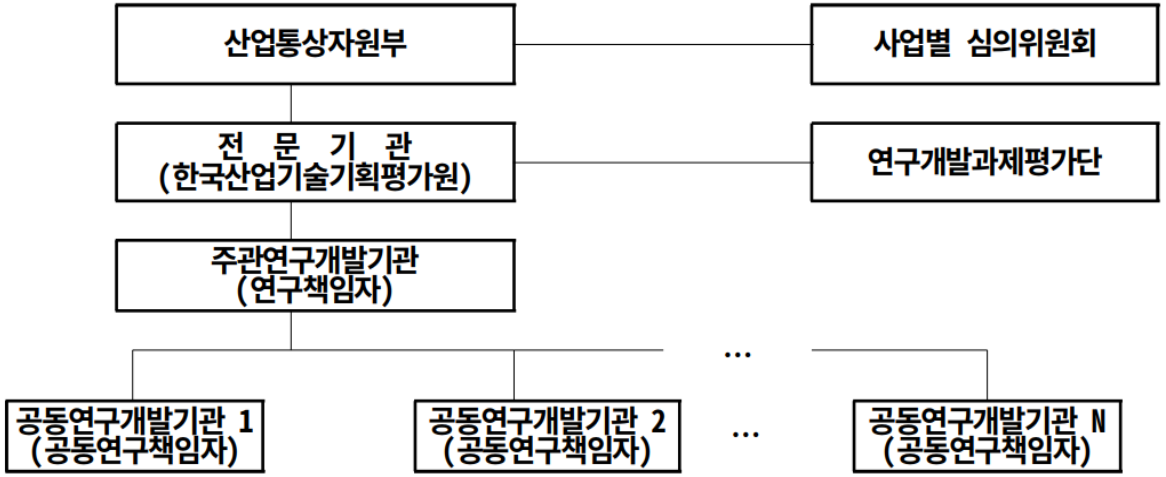

2-2 통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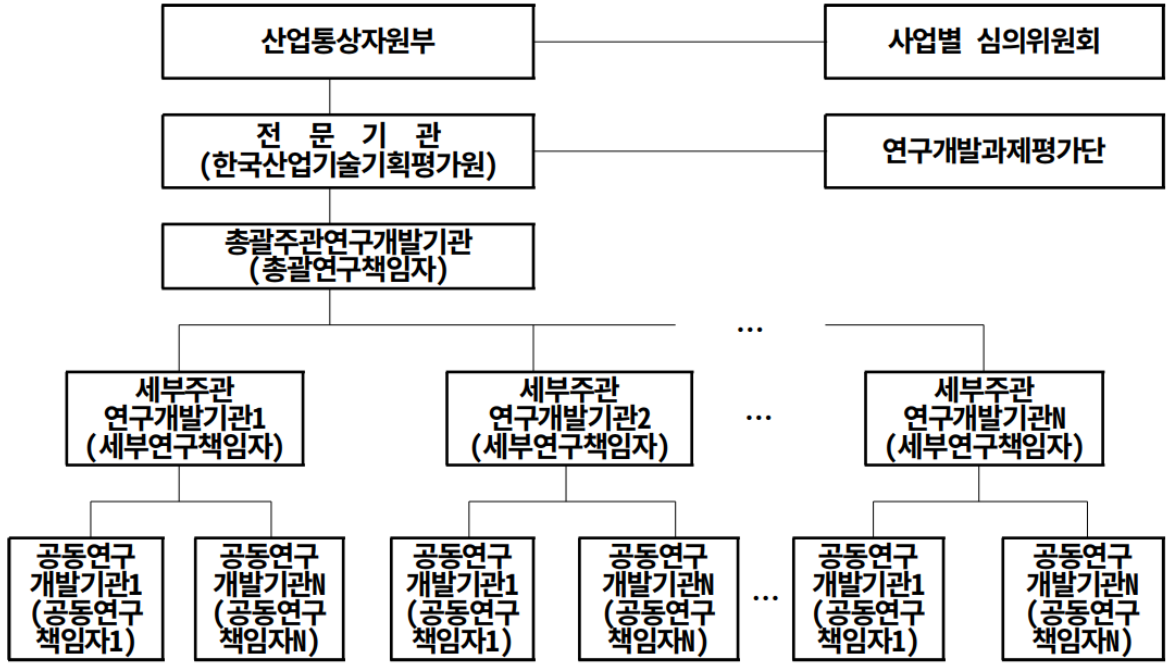

2 사업추진체계

*상세 내용은 공고문(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3 Cascading형 일반형 - 유연컨소시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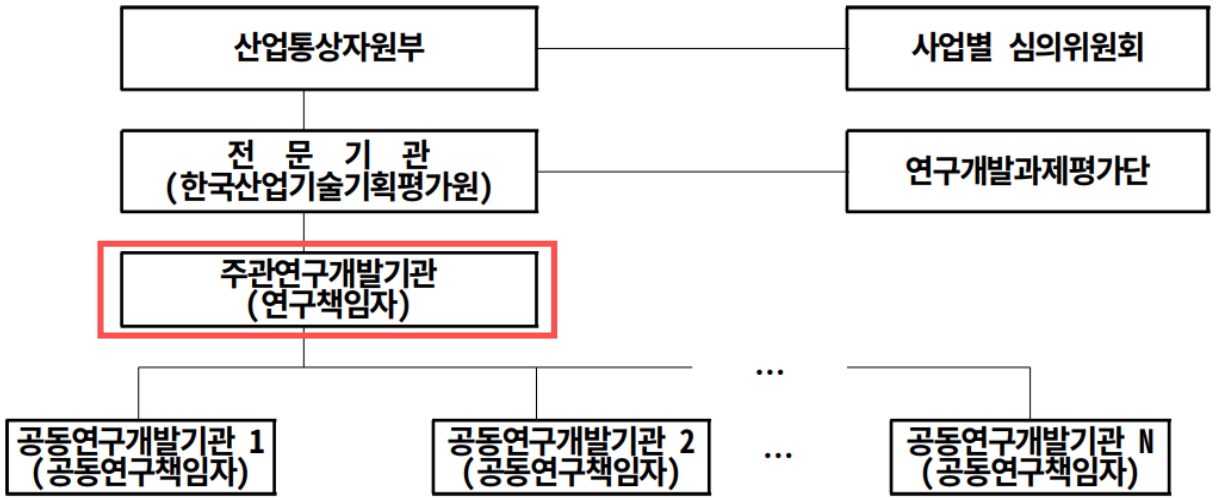

개요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전환을 위해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비 배분의 전권을 갖는 형태

신청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만 과제를 신청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선정 후 구성

주관자격조건

1. 최근 3년 내 주관기관으로 산업부 R&D 수행 경험*이 있는 대기업·중견기업 또는
   * 과제 기간이 '22. 1. 1.부터 접수 마감일('25. 7. 4.) 사이에 포함되는 경우
2. 우수평가*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 평가결과 통보일이 '22. 1. 1.부터 접수 마감일 사이이며, 평가 결과 '우수'인 경우
3.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주관한 기업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 월드클래스기업(WC300포함), 소부장으뜸기업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상세 내용은 공고문(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공통사항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지자체 지원 연구개발비 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 구성)

*수요기업 :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70% 이하	50% 이하
중소기업	75% 이하	67% 이하
그 외	100% 이하	100% 이하

신설

★ 대형통합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혁신도전형에 해당할 경우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산정 가능

★ 수요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산정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정부지원비중을 80%, 중견기업은 65% 이하로 산정 가능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비중 계산 시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

★ 코로나-19 특별지침은 작년('24년)부터 폐지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상세 내용은 공고문 (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동일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수요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중견기업법 시행령 7조)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그 외'로 필요 시 부담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상세 내용은 공고문 (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징수대상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실시하는 경우

1)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가 실시하고 로열티를 받는 경우

2)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개발기술을 활용한 수익 발생)하는 경우

기술료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산정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납부기한

1)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기술료 징수

- 처음 기술료 징수한 해의 다음 해 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일부터 7년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2)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하는 경우

-처음 수익 발생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일부터 7년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상세 내용은 공고문(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핵심전략기술) 고시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과제 수행기업은 중소기업 수준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현금비중 부담 가능(단, 협약 체결 후 별도 심의 필요)
- (산업위기지역) 해당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이내로 해당 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개정
- (3천만원 이상 장비) 전문기관의 장비심의 및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가 필수이며, 장비 변경(미구매 포함) 시 사전 승인 필요

- (인건비계상률) 전체 참여연구자(책임자 포함, 학생 제외)는 인건비계상률(舊 참여율) 최소 10%이상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현물+현금)의 1%이상 산정(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출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만 의무 산정)
- (외주용역)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획서에 반드시 기재(단순 조립 및 시험 분석 등 기술개발이 아닌 부분만 산정 가능)
- (연구수당)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 불가(총괄과제 산정 불가)
- (청년 추가채용 혜택) 청년의무채용 제도는 '24년부터 폐지되었으나, 종전 기준에 따라 청년추가채용 시 기관부담현금 감면 가능
- (사업화컨설팅) 주관인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 연차에 연구활동비에 예산 계상 가능
- (외부기술도입비) 외부 기술 도입 후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를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단,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국내에 없는 국외기술은 50%), 현물은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전 집행분까지 인정

신설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비) 연구책임자 기준 산업부 R&D 사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연차별 5억원 이상일 경우 활용 필요

★ (인건비의무편성 폐지) 총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인건비로 의무 편성하는 '인건비 최소 비중 가이드라인' 폐지('24~)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상세 내용은 공고문(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4-1 지원분야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추진체계	개발형태	공모형태
자동차산업기술개발(그린카/스마트카)	일반형/통합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자유공모형
전기차배터리시스템일체형급속무선충전기술개발	통합형		지정공모형
SDV용AI가속기반도체기술개발			

추진체계

1. 일반형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 수행 과제
2. 통합/병렬형 : 총괄-세부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결과 상호 연계)
   - (통합형) 총괄/세부가 1개 컨소시엄으로 신청
   - (병렬형) 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가능한 과제로, 총괄/세부 별도 신청 후 경합

개발형태

1. 혁신제품형: 산업원천 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
2. 원천기술형: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공모형태

1. 지정공모형: 대상 기술과 도전적 기술 목표 제시
2. 품목지정형: 필요 기술의 구체적 제원(Spec.)을 제시하지 않고 제품, 제품군만 제시
3. 자유공모형: 사업 범위 내에서 제원 제시 없이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신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상세 내용은 공고문 (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4-2 신청자격

신청자격

1.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1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 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호, 제4의2호, 9의2~9의 5에 해당하는 기관

2. 주관이 기업인 경우 **법인사업자**(접수마감일 기준) **및 부설연구소 보유**(선정평가 개최일 전날 기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인정 연구소로, 연구개발전담부서는 해당하지 않음

3. 국외 소재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국외기관과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양자간 국제공동연구계약을 체결**
   -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상세 내용은 공고문(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공통사항

문제 기관 변경 등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하고, **선정평가일 3영업일 전 18시**까지 **공문 및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 가능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제외대상

*일부 예외 기준은 반드시 공고 참조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2. 기업 부도
3.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4. 채무불이행자
5.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6.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500% 이상으로 간주)
7.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8.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9. 최근 결산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재무기준

1. 부채/유동비율은 **최근 3개년 결산** 및 창업 5년 이상 기업 대상 적용
2. 부채/유동비율 및 자본잠식 판단 시 국제회계기준(K-IFRS) 대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이 가능**하나, **기준 혼용 불가**
   * 회계사 날인 재무제표 제출 필요
3. 개별(별도)재무제표만 활용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상세 내용은 공고문(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제외대상

- **(총량제) 한계기업에 한하여 주관으로 동시 수행하는 산업부 R&D 과제 수가 아래 기준 초과인 경우**

※ 6개월 내 종료과제, 총괄과제, 예타사업, 국가표준기술개발, 최종평가 "우수"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1회에 한함) 등 제외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인건비계상률 미달)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이 10% 미만인 경우**
- **(3책5공) 연구책임자(총괄/세부과제 해당, 공동연구책임자 제외) 3개, 참여연구자 5개 초과 과제를 수행하려는 경우**

※ 국외기관이 연구비를 부담하는 국제공동과제 수행 시 상기 기준 +1개 개정

5 평가 절차 및 기준

*상세 내용은 공고문(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5-1 평가절차 및 평가 일정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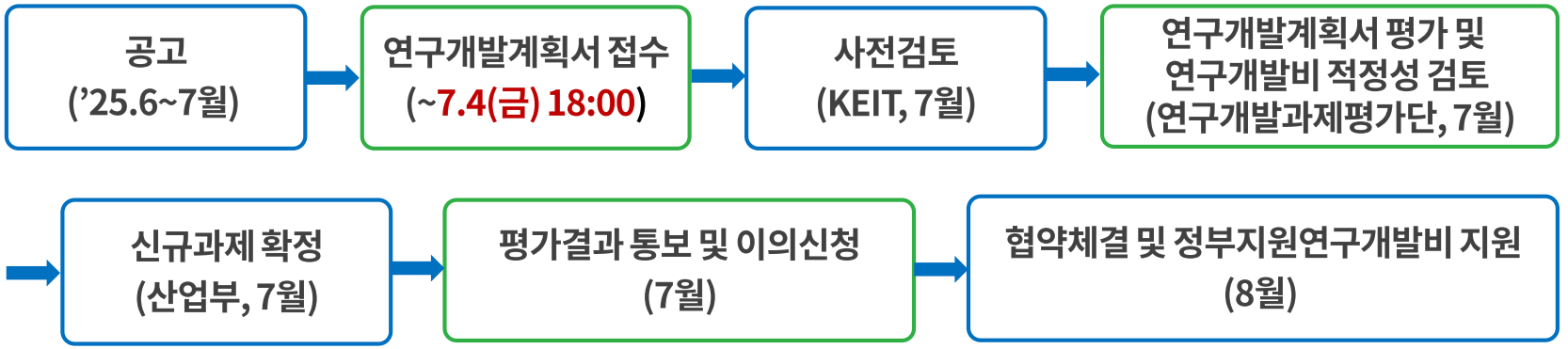

- 사전검토: 전문기관(KEIT)에서 접수한 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자격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단(평가위원회)은 계획서 중심으로 평가, 신청기관은 평가단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제출

  * 경쟁률에 따라 서면평가 개최 가능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평가 시 과제별 연구개발비 검토 병행
- 신규과제 확정: 산업부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 확정
- 평가결과 통보: 산업부에서 확정받은 결과를 신청기관에 공문으로 통보
- 이의신청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5 평가 절차 및 기준

*상세 내용은 공고문(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5-2 평가기준

혁신제품형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혁신제품	기술성(50)	▪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40)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10)
	연구역량(20)	▪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사업화 및 경제성(30)	▪ 사업화 실적(10) ▪ 사업화 계획 및 의지(5) ▪ 경제성(10) ▪ 지역적파급효과(5)

점수기준

- 70점 이상 지원대상이며, 예산 범위에 따라 70점 이상인 과제인 경우에도 점수 순위에 따라 제외 가능
- 통합형 점수 계산: (총괄과제 평가점수 × 30%) + (세부과제 평가점수 평균 × 70%)
- 감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하며, 가점은 미래차전환부품 품목에 한해 사업재편기업인 주관기관에 1점 부여 개정

  *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 대상자(-3점)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3점)

6 기타 유의사항

*상세 내용은 공고문(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타 유의사항

유의사항

1. 융합 R&D: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고도화, 사회문제해결, 신산업(시장)창출 등 가치창출형
2. IP R&D 연계: 특허전략 수립을 위해 특허청 'IP R&D사업'과 연계 원칙
   * 특허전략수립비 계상(타 용도로 전용 불가)이 필요하며, 협약 후 매칭
3. 표준 연계: 계획서 내 표준화 관련 연구목표 수립 및 국제표준화 기구(ISO/IEC/JTC1) 기고·발표 원칙
   * 표준화 목표 수립 및 국제표준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며, 상세내용은 표준화 과제별 동향 보고서(별첨) 참고
4. 국제공동: 국외 소재 기관이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예산 내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편성
5. 복수형 R&D: 동일 과제에 복수 연구개발기관이 동시 수행
   ('미래차 전환 부품 기술개발' 품목 대상)
6. 대형통합형: 산업 생태계 및 가치사슬(Value-chain) 형성을 목적으로 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총괄-세부형 과제
7. 주관인 중소기업은 사업 착수 2년 내에 특허전략 수립비용 산정 및 선진 특허분류(CPC) 활용 선행기술 회피 전략을 포함한 보고서 제출 필수
   * 특허전략수립비는 전용 불가하며, 전담부서 보유 시 계상 불필요
8. 과제 수행 정보의 전산시스템(NTIS) 상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비공개 요청이 가능하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
   * 연구개발계획서, 중간보고서는 공개대상이 아님
9.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지원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진도점검 및 평가를 통해서도 조정될 수 있음

7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상세 내용은 공고문(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접수방법 및 제출기한

접 수 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제출기한 '25. 7. 4. (금) 18:00 **(IRIS 서버 기준)**

* 18:00 이후 수정 및 제출 불가 / 기한 내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구제 불가

제출서류 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접수**

서류명	비고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업로드(HWP 또는 PDF) * IRIS 첨부파일 중 계획서 PART2 활용
2. (기업 필수) 사업자등록증	파일 업로드(PDF)
3.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파일 업로드(PDF), 전체 기관
4. (국외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파일 업로드(PDF)
5.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파일 업로드(PDF), 전체 기관
6.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파일 업로드(PDF), 전체 기관
7. (기업 필수) 주관기관 기업연구소 인정서	파일 업로드(PDF), 주관인 기업만
8.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파일 업로드(PDF), 전체 기관
9.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전산 입력, 전체 기관
10. (해당 시) 감점사항 확인서	전산 입력, 해당 시 추가증빙 제출

서류명	비고
11. (해당 시)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	파일 업로드(PDF), 한계기업인 주관만
12. (필수) 연구자 동시수행과제수 확약서	파일 업로드(PDF), 전체 기관
13. (선택) 수요기업 확약서	파일 업로드(PDF), 해당 시
14. (선택) 비공개과제 신청서	파일 업로드(PDF)
15. (기업 필수) 재무제표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제출 (new.findsystem.co.kr) * 상기 시스템 활용 불가 시 최근 3년 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또는 회계사 날인본) 별도 제출
16.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파일 업로드(PDF) 신설
17. (해당 시) 사업재편계획 승인 문서	파일 업로드(PDF) * 사업재편기업이 '미래차 전환 부품 기술개발 품목의 주관으로 신청 시에만 제출

7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상세 내용은 공고문(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공모분야(사업, 품목/RFP)를 잘못 선택한 경우 수정이 불가하므로, 처음부터 다시 제출 필요
- 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세부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전체 과제 미접수 처리
- 공고문 상 비필수 항목이더라도 해당 시 제출 필요(예시: 주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 제출)
- 신설 연구개발 과정 중 AI를 활용하거나, 성과물에 AI가 포함되는 경우 개발 목표 및 내용 등 계획서 작성 요령 준수 필요
- 신설 자동차 분야 데이터 구축을 위한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서 제출 필요(자동차데이터포털 bigdata-car.kr을 통한 등록 방안)

IRIS 제출 전 사전 준비사항

- 기관별 연구자(책임자 포함) IRIS 가입 및 국가연구자번호 확보: nri.iris.go.kr
- 기관별 책임자 학력 및 경력 등록: nri.iris.go.kr
- 기관별 책임자 소속부서 등록: nri.iris.go.kr > 상단 연구자정보 > 연구자기본정보 > '회원정보변경' 버튼
- 기관정보 등록: 최초 등록은 소속기관 가입자 중 누구든 사업자등록증으로 가능하며, 그 전에 대표자 개인의 가입 필요
  * 메뉴 위치: iris.go.kr > 화면 우측 QUICK LINK 중 [기관신청] / 사업자용 범용인증서로도 등록 가능
- 각 기관 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전문기관 웹사이트(srome.keit.re.kr) 가입: 공문 발송 및 전자평가 시 활용
- IRIS/SROME 모두 연락처, 소속기관 등의 개인정보를 최신화
- 가입 시 법인/개인실명확인(서울신용평가정보) 및 전산시스템 문의(IRIS/SROME)는 사무처리 시간(9~18시) 내 처리 필요

8 문의처

*상세 내용은 공고문(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평가, 기획의도 관련 문의처

분야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전기수소차 분야 (그린카, 전기차배터리)	미래자동차실	053-718-8234 8340 8381 8452 8728	전기수소차PD	053-718-8713 (hajinuk@keit.re.kr)
				053-718-8473 (hdj0223@keit.re.kr)
자율주행차 분야 (스마트카, SDV)			자율주행차PD	053-718-8275 (shyoon11@keit.re.kr)
				053-718-8337 (zozonon@keit.re.kr)

전산 접수 문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규정 문의처 산업기술 R&D 상담콜센터(1544-6633)

9 FAQ

*상세 내용은 공고문(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Q) IRIS를 통한 서류 제출이 원활하지 않은데?

A) IRIS는 타 기관(KISTEP)에서 운영하여 KEIT 담당자가 전산 문제에 빠른 대응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Q) 연구개발기관 간 배정해야하는 금액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A) 개발내용 및 금액은 주관기관 주도 하에 컨소시엄 내에서 협의해주시면 됩니다.

Q) 통합형 과제의 제출 순서가 있는지?

A) 총괄연구개발과제가 먼저 제출을 시작하여 총괄과제번호를 확보하여야 하며,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제출 시 해당 총괄과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Q) 현물이란?

A) 기업의 현금 부담 감경을 위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참여연구자(직원) 월급, 보유재료 투입비, 보유장비,
개정 SW구매/임차비 등을 현물로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 과제시작일 기준 구입 5년 이내 &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 계상한 연차종료일 이후 도래하는 장비, SW에 대해 구입가의 20%이내 산정

Q) 동일 공고 내 기관별 접수 건수 제한이 있는지?

A) RFP가 다른 경우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한계기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 3책5공, 인건비계상률 등 제한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Q) 발표 일정 및 시간은?

A) 접수 후 담당자 배정, 사전검토 등으로 1주 내외 소요되며, 이후 담당자가 일정 및 시간(20분 이내)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9 FAQ

*상세 내용은 공고문(bit.ly/keit25_jdc_2nd) 참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Q) 신청자격 적정성 리스트 중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의 증빙은 무엇을 제출하면 되는지?

* '해당할 경우 추가 증빙 필요'로 기재되어 있음

A) 공고와 부합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할 증빙은 없습니다.

Q) 기술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A) 과제 종료 후 최종 정산 결과 통보 시 해당 시점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 납부 계획 제출을 요청드리며, 이후 매년 6월 말까지 KEIT에 제출된 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기술료를 산정합니다.

Q) 과제에서 기업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A) KEIT에서 시행한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이수한 지원인력에 대해 간접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 신규인력 인건비의 100%, 기존인력 50%까지 가능

Q) 신규채용인력 현금 적용 기준은?

A) 사업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일까지 채용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은 인건비 현금 대상입니다.

Q) 신규인력을 계획에 맞춰 채용하지 못한 경우?

A) 실집행 기준 기존인력인건비>신규채용인건비인 경우 미채용에 따라 초과된 기존인력 인건비를 불인정합니다.

* 인건비 총액 내에서 신규인력 인건비는 통보성으로 조정 가능

감사합니다

내일을 바꾸는 기술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